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영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351

발의연월일: 2025. 3. 26.

발 의 자:권영진·김상훈·박충권

엄태영 • 박형수 • 이만희

김도읍 • 인요한 • 임종득

이종배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(NDC)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1차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건물부문에서는 신축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, 기존 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물의 보급·확산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음

이를 위해서는 전체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건축물의 에 너지효율 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나, 녹색건축 시 장의 역량과 참여유인 부족 등으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

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부터 선도적으로 녹색 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, 그 일환으로 기존 건축물 에 대하여는 공공건축물부터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함으로써 그린리 모델링 시장생태계 조성하고, 공공기관의 그린리모델링 추진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을 경험한 사업자의 확산에 따른 자발적 참여환경을 마련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.

주요내용

- 가. 노후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효율이 낮아 에너지 성능 및 효율 향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토록하고,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자 함(안 제27조의2 신설)
- 나.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추진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(제1 3조의2 및 제35조)
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제1항부터 제3항까지" 를 "제1항과 제2항"으로, "방법 및 에너지 소비량의 적정성 검토방법" 을 "방법"으로 한다.

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7조의2(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을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, 해당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②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건축물이 국방·군사시설에 속하거나 건축물의 보안상 필요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사업의 목표가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,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.
 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추진과정 및 성능개선 효과 등을 관리·감

독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관리 및 감독, 추진 대상 선정 기준, 추진계획의 수립과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6조의2"를 "제6조의2제1항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제29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 혂 행 제13조의2(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제13조의2(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) ①・② (생 소비량 공개 등) ①・② (현행 과 같음) 략)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<삭 제> 따라 보고받은 에너지 소비량 을 검토한 결과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 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 을 요구하여야 하고, 공공건축 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야 한다.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④ 제1항과 제2항-----른 에너지 소비량 보고, 공개, 표시 방법 및 에너지 소비량의 - 방법 -----적정성 검토방법 등 필요한 사 항은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한 다. <신 설> 제27조의2(공공건축물의 그린리 모델링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성능향 상 및 효율 개선이 필요한 건 축물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

는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그

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, 해당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. ②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건축물이 국 방·군사시설에 속하거나 건축 물의 보안상 필요성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목 표가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 하고,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한 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 물의 확대를 위하여 공공건축 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의 추진과정 및 성능개선 효과 등을 관리·감독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관리 및 감독, 추진 대상 선정 기준, 추진계획의 수립과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35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)

- ① (생 략)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 제1항 ------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.

1. ~ 7. (생략) <신 설>

8. (생략)

③ • ④ (생 략)

제35조(권한의	위임	및	위탁	등)

- ① (현행과 같음)
- ② ----- 제6조의2

- 1. ~ 7. (현행과 같음)
- 8. 제29조에 따른 그린리모델 링 창조센터
- 9. (현행 제8호와 같음)
- ③ ④ (현행과 같음)